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등  
'N번방' 관련 법률 개정

6월 2일  
부터 시행!
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 
소지만 해도

처벌  
받습니다



여성가족부



한국여성인권진흥원

Women'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

##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



**2020.01.02.**

국회국민동의청원 'N번방 청원' 10만명 동의

**2020.01.27.**

청와대국민동의청원 'N번방국제공조수사 촉구 청원'  
20만명 동의

**2020.03.21.**

'N번방' 관련 4개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모두 청원  
시작 하루 만에 최소 요건 20만명 달성

**2020.06.02**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 
'N번방' 관련 법률 개정 공포 및 시행



이렇게 바뀌었습니다

# 피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과 의제강간 연령 상향

아동·청소년  
이용 음란물



의제강간  
연령 기준



아동·청소년  
성착취물



\*'음란성'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 
'성착취 범죄'임을 명확히 했습니다.

의제강간  
연령 기준



\*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 
16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과 성행위를  
할 경우 형사 처벌 받습니다.

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

#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개정

—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—



영리 목적의  
배포·판매 및 광고·소개

**5년** 이상의 징역



영리 목적이 아닌  
배포·판매 및 광고·소개

**3년** 이상의 징역



구입·소지·시청 등

**1년** 이상의 징역



아동·청소년 강간·강제추행  
등을 예비·음모

**3년** 이하의 징역

\*소지죄의 경우도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

**이렇게** 나아집니다

# 신고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

**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제작·판매 행위,  
제작을 위해 아동·청소년을 알선하는  
행위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 
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 
마련되었습니다.**



# 디지털 성범죄 '피해 영상물 삭제' 국가가 지원합니다

## 삭제 지원



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
**02-735-8994**

## 피해상담



여성긴급전화

**1366**